

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안 개정내용 요약

조항	현행조례	개정조례
제4조 (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)	1.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	1.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 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
제6조 (지역특화발 전특구 광고물 등의 특례)①,②1. 가.나,2,3	〈신설〉	② 특구 홍보 광고물 표시방법 1. 지주 이용 간판 가. 간판의 높이는 10미터, 1면의 면적은 50제곱미터, 간판합계면적 150제곱미터 이내 표시 나. 도로의 갓길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,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 떨어져 표시 2. 선전탑 높이 15미터 이내 표시 3.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없어야 함
제9조 (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)	4.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----	제10조 4.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---
제10조 (광고물 등의 정비 등 지원)	〈신설〉	제11조 ④ 불법광고물 등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제12조 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	① 법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. ③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다만, 금품·향응 수수, 불법로비, 배임·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. 1. 건축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. 조명 등 광고물 관련 분야 전문가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--	제13조 <삭 제> 법 제7조 규정 <삭 제> 영 제32조 규정 ①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<삭 제> 당연 규정 1. 건축·디자인·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. 조명·청소년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②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--

조항	현행조례	개정조례
제12조 (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)	④ 1. 소위원회 위원장은 <u>건설관리과장</u> 으로 한다. 4.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<u>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</u> 따로 정할 수 있다. <신설>	④ 1. 소위원회 위원장은 <u>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</u> 으로 한다. 4.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<u>심의위원회 임기를 적용한다.</u>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제7조 및 영 제32조에 따른다.
제13조(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)	③ 전자우편, 서면, <u>화상회의</u> 등의 방법으로 심의...	제14조 ③ 전자우편, 서면, <u>화상회의, 전자(SNS)</u> 등의 방법으로 심의...
제15조(위원의 해촉)	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	제16조(위원의 위촉해제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.
제25조(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)	⑦ 해당하는 <u>사유로</u>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----	제26조 ⑦ 해당하는 <u>사유로</u>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----
제26조(교육의 위탁 등)	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<u>실시할 경우에는</u> ----	제27조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<u>실시한 때에는</u> ----
제27조(수수료)별표 4의 13호	〈신설〉	제28조 별표 4의 13. 입간판 신고 수수료 4,000원
제27조(수수료)별표 6의 나	〈신설〉	제28조 별표 6의 나.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 7,500원
제27조(수수료)③항 2	2.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	제28조③ 2.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(구청장이 일체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